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법제처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노동, 복지 및 환경 등 사회문화 분야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문화법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법제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제지원국 1개 과를 폐지하면서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며, 법제처에 주택·건축 분야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4. ~ 9.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제관 6명”을 “법제관 7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36”을 “235”로 하고, 일반직 계 “235”를 “23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0”을 “219”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7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1명
2. 행정법제국 1개 법제심의관	1명
3. 사회문화법제국 1개 법제관	1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① 사회 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u>법</u> <u>제관 6명</u> 을 둔다.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① ----- ----- ----- <u>법</u> <u>제관 7명</u>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36</u>	<u>235</u>	-1
•	•	•	
•	•	•	
일반직 계	<u>235</u>	<u>234</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20</u>	<u>219</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9